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3 선고 2021나6055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3 선고 2021나6055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9 선고 2021가소1450073 판결

전 문

원고, 피항소인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박민정, 임남구

피고, 항소인B(개명전 : C)

변론 종결2022. 4. 29.

판결 선고2022. 5. 13.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9. 선고 2021가소1450073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314,4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2. 5.경 피고(피보험자)와 사이에 무배당입원특약, 무배당특정질병입원특약 등이 포함된 D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구미시 E에 있는 의료법인 F G병원에 입원한 환자인데, 2012. 5.경부터 2016. 12. 8.경까지 사이에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위 병원에 입원하여 적정하게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을 교부받아 원고를 비롯한 여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98,835,713원을 수령하여 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갑 제1호증).

다. 피고는 반복적인 장기입원에 따른 보험금 수령 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사기죄)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이하 '피고'라 한다)은 2012. 6. 1.경 위 G병원에서, 사실은 피고는 형식적으로 입원 수속을 마친 후 수시로 외출·외박을 하고, 물리치료 내지 약물치료 외에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하는 등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H로부터 '천식' 등의 병명으로 진단을 받아 위 병원에 입원하여 마치 피고가 그 무렵부터 2012. 7. 2.경까지 32일 동안 위 병원에 입원하여 적정하게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는 그 무렵 피해자 I에 위와 같이 마치 피고가 실제로 위 병원에 입원하여 정상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보상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2. 7. 6.경 1,28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별지는 생략함)의 순번 9 내지 16, 73 내지 112, 129 내지 136, 145 내지 239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2. 8.경까지 총 151회에 걸쳐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원고로부터 합계 98,835,713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는 위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20. 3. 31. 징역 10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고단1836호 판결), 피고는 위 형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대구지방법원 2020노1166호로 2022. 1. 12.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대법원(2022도1476)에 사건 계속 중에 있다.

마. 위 범죄사실 중 원고에 대한 편취 금액은 다음의 표 기재와 같이 2012. 9. 12.부터 2016. 10. 24.까지 합계 31,815,713원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2021. 1. 26.경 손해액 중 12,501,232원을 지급받았다.

2012-09-12	2016-10-24	3,206,496원
2013-12-06	3,500,000원	
2014-01-17	3,400,000원	
2014-04-04	1,752,832원	
2014-05-12	1,750,000원	
2014-06-19	1,330,000원	
2014-11-11	2,000,000원	
2015-03-16	2,506,404원	
2015-06-02	2,507,157원	
2015-07-29	1,123,375원	
2015-08-12	1,400,000원	
2016-03-28	2,424,163원	
2016-05-23	702,629원	
2016-10-24	1,404,219원	
2016-10-24	1,404,219원	
2016-10-24	1,404,219원	

2012-09-12	2016-10-24	3,206,496원
합계		31,815,713원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시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반복하여 입원 치료를 받은 다음, 원고로부터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현저히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편취금 31,815,713원 중 일부 변제받은 12,501,232원을 공제한 나머지 편취금 19,314,48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마지막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6. 10.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1. 6.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선택적 청구원인 중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이상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주채광

판사석준협

판사권양희